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538호 2009. 4. 29.

규 칙	
제58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	2
공 고	
제2009-345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(안) 주민재공람 공고	9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

- ▶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

규 칙

서울특별시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09년 4월 29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

1. 개정이유

「사무관리규정」 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종합적으로 기록·보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,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,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 실시를 통해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(안 제1조)
- 나.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(안 제3조)
 -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및 구정운영 4개년 개발사업 중 주요사업
 -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
 -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
- 다.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중랑구 홈페이지 공표(안 제4조)
- 라.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별 정책자료집의 발간(안 제5조)
 - 추진배경, 추진경과 및 비망록
 - 계획에서부터 시행, 완결까지 관련된 문서 등
- 마.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평가 실시(안 제6조)
- 바.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수행자 격려(안 제7조)

서울특별시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사무관리규정」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(이하 “중랑구”라 한다)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,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,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책실명제”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.
2. “정책수행자”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.
3. “총괄부서”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획·평가하고,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4. “담당부서”라 함은 정책을 입안·결정·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)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.

1.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및 구정운영 4개년 개발사업 중 주요사업
2.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되는 사업은 제외한다.

3.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록·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

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, 최종결재자, 설계자, 용역연구기관, 시공회사 및 대표, 감리자, 감독 공무원,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.

제4조(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)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

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국장 주관으로 자체 심사·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.

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③ 담당부서에서는 부여 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중랑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책자료집 발간)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에서 선정된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단위업무 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배경

2. 추진경과 및 비망록(별지 제3호서식)

3. 계획에서부터 시행,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문서

가. 계획서, 보고서, 추진계획표, 일정표, 심사분석 결과 등

나.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

다. 공청회,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

라. 정책·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, 관련자 및 관련 기록

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완결 일자별로 편철하여 복사 또는 인쇄하며,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년도 다음해 2월까지 5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4부는 문서관리부서로 제출하며, 문서관리부서에서는 1부는 보존서고에 영구보존하고 3부는 국가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 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⑥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평가)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,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관리)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표창 등은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책실명제 등록대상사업 선정 통보서

선정일자		소관부서	
정책사업명			
정책수행자	※ 입안자, 최종결재자, 설계자,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, 감독공무원, 준공검사자 등		
주요내용	※ 인가·결정·등록·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		

[별지 제2호서식]

정책실명제 등록부

등록번호	정책명	정책요지	소관부서	담당자

정책추진과정 비망록

정책명		총 소요기간 및 예산액	
추진배경			
추진경과			
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			
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			
기타			
공개구분			

※ 공개구분란 : 공개, 부분공개,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. 부분공개,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()안에 표시한다.

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345호

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(안) 주민재공람 공고

1.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 상봉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재공람합니다.
2. 본 재정비촉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공람 기간내에 아래 재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09. 4. 29.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가. 재공람 기간 : 2009.4.30 ~ 5.14 (14일간)

나. 재공람 장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(신내동 662) 중랑구청 도시개발과(☎02-490-3387)

다. 재공람 사유 : 상봉4재정비촉진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리

- 상봉4재정비촉진구역→상봉4-1재정비촉진구역, 상봉4-2재정비촉진구역

라. 재공람 내용 :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(안)

1) 촉진계획의 개요

명 칭	위 치	면 적(㎡)	개발기간	
			기준년도	목표년도
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4-1재정비촉진구역	중랑구 상봉동 74번지 일대	8,662.6	2009	2012
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4-2재정비촉진구역	중랑구 상봉동 50-1번지 일대	18,766.5	2009	2012

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상봉4-1 재정비촉진구역	합 계		8,662.6	100.0	
	계획 기반 시설	소 계	1,505.9	17.4	
		광 장	785.0	9.1	
		도 로	720.9	8.3	
	주거 용지	소 계	7,156.7	82.6	
		상업복합	7,156.7	82.6	
상봉4-2 재정비촉진구역	합 계		18,766.5	100.0	
	계획 기반 시설	소 계	5,439.6	29.0	
		광 장	1,856.5	9.9	
		도 로	3,545.7	18.9	
		철 도	37.4	0.2	
	주거 용지	소 계	13,326.9	71.0	
		상업복합	13,326.9	71.0	

3) 인구·주택 수용계획 : (공람도서 참조)

구분	인구수	세대수
상봉4-1재정비촉진구역	517	196
상봉4-2재정비촉진구역	950	360

4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

구분	명칭	개소	면적(㎡)	비고
문화시설	문화복지시설	1	500.0	상봉4-1재정비촉진구역 1개소 신설, 건축물내 연면적 기준
문화시설	문화복지시설	1	1,000.0	상봉4-2재정비촉진구역 1개소 신설, 건축물내 연면적 기준

5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: 생략(공람도서 참조)

6) 교통계획 : 생략(공람도서 참조)

7) 경관계획 : 생략(공람도서 참조)

8)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촉진사업의 종류	비고
촉진구역	상봉4-1재정비 촉진구역	종량구 상봉동 74번지 일대	8,662.6	도시환경정비사업	신규
	상봉4-2재정비 촉진구역	종량구 상봉동 50-1번지 일대	18,766.5	도시환경정비사업	신규

9)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

◦ 해당사항 없음.

10) 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

구분	구역명	주 용 도	최대용적률 (%)	건폐율 (%)	높이계획
촉진구역	상봉4-1재정비 촉진구역	주거, 업무, 판매, 문화	400%이하	60%이하	120m이하
	상봉4-2재정비 촉진구역	주거, 업무, 판매, 문화	400%이하	60%이하	160m이하

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

구역명	구역면적 (㎡)	기반시설면적(㎡)					
		계획 기반시설①	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②	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	유상 매입시설④	순부담 (①-②-③-④)	
						면적(㎡)	비율
상봉4-1 재정비 촉진구역	8,662.6	1,505.9	45.2	253.1	-	1,207.6	14.0%
상봉4-2 재정비 촉진구역	18,766.5	5,439.6	1,268.1	1,551.7	-	2,619.6	14.0%

12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: 생략(공람도서 참조)

13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구 분	사업기간	해당구역	비 고
도시환경정비사업	2009~2012	상봉4-1재정비촉진구역	
도시환경정비사업	2009~2012	상봉4-2재정비촉진구역	

14) 촉진구역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생략(공람도서 참조)

15) 촉진구역별 정비계획

구분	구역면적 (㎡)	용적률(%)			최고높이 (m)	주용도	사업방식
		기준(%)	최대(%)	계획(%)			
상봉4-1재정비 촉진구역	8,662.6	360	400	399.8	120.0	주거,업무, 판매,문화	도시환경 정비사업
상봉4-2재정비 촉진구역	18,766.5	360	400	399.7	160.0	주거,업무, 판매,문화	도시환경 정비사업

16)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(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)

가) 용도지역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계		27,429.1	-	27,429.1	100.0
상봉4-1재정비촉진구역	준주거지역	8,662.6	-	8,662.6	31.6
상봉4-2재정비촉진구역	준주거지역	18,766.5	-	18,766.5	68.4

나)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조서

(1) 도 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대로	1	15	35	주간선 도로	8,100 (380)	중랑교	망우동 서울시계	일반 도로		망우로
변경	대로	1	15	35~41	주간선 도로	8,100 (380)	중랑교	망우동 서울시계	일반 도로		일부구간 폭원변경
신설	소로	2	-	12	국지 도로	205	상봉동 405-3	상봉동 49-11	일반 도로	-	-

(2) 광 장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신설	④	망우역 광장	교통광장	상봉동 50- 3번지 일대	1,856.5	-	
신설	⑤	망우역 광장	교통광장	상봉동 72- 7번지 일대	785.0	-	

17) 광고물 관리계획 : 생략(공람도서 참조)

18) 폐기물 처리계획 : 생략(공람도서 참조)

19) 기타

가)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: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

지구명	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	최대용적률	높이	건폐율	정비수법	비고
상봉재정비 촉진지구	신설	상봉4- 1 재정비 촉진구역	상봉동 74번지 일대	8,662.6㎡	400% 이하	120m 이하	60% 이하	전면개발	
	신설	상봉4- 2 재정비 촉진구역	상봉동 50- 1번지 일대	18,766.5㎡	400% 이하	160m 이하	60% 이하	전면개발	

나) 관계도서 :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.

다만, 본 재정비촉진계획(안)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
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도 있음.